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1191
----------	------

제출년월일 : 2010. 11.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지역 아동의 건전 육성과 아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체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역아동의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한 단체장의 책무를 명확히 함
- 센터의 사업(안 제5조)
 - 지역아동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
- 이용대상(안 제6조)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의 범위를 정함
- 예산의 지원 등(안 제7조)
 -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 함
-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심의 기구를 구성 운영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 첨
- 예산상황 : 1,777,467천 원(2010년)
 - 운영지원 1,183,467천 원, 급식지원 594,000천 원
-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10. 09. 03. ~ 2010. 09. 27)결과 : 의견없음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신고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 설립과정과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실행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아동의 보호·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 후 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 지원 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5. 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3. 차상위계층, 조손·다문화·장애인·한부모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제7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지역아동 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6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

4. 충주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표

5. 충주시의회 의원

6.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7. 아동복지업무담당과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센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심의 및 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임과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1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하여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여 조속히 법정기준을 갖추어 신고토록 지도·점검하도록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도·점검시 지적·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3>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1조(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시설의 설치신고 등)

-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5.10.17, 2006.7.3>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삭제 <2006.7.3>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
7. 삭제 <2002.12.26>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관련조례

-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 사업비(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
-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제3조(수당)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